진주시 · 총림선원 소송에 선학원도 가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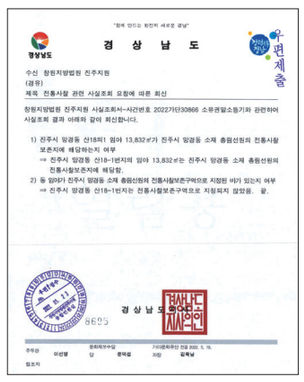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진주시에 매각한 사건과 관련,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에 선학원이 피고 진주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주목된다. 특히 선학원 측은 준비서면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분원의 재산권한 일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6월 9일 진주시와 총림선원간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피고 측인 진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보조참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 등 한쪽을 승소시키기 위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선학원 측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총림선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선학원 측은 "사찰은 사찰의 모든 재산을 선학원에 증여해 선학원의 분원이 됨으로써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분원의 재산은 모두 선학원 소유이며 분원이 관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처분권한은 소유자인 선학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선학원의 분원관리규정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상 재단이 분원 재산을 분원 동의 없이 처분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 상 남 도

우편제출

수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유)
제목 전통사찰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실조회서-사건번호 2022가단30866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진주시 망경동 산18의1 임야 13,832㎡가 진주시 망경동 소재 총림선원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주시 망경동 산18-1번지의 임야 13,832㎡는 진주시 망경동 소재 총림선원의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
2) 동 임야가 진주시 망경동 소재 총림선원의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지 여부
⇒ 진주시 망경동 산18-1번지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끝.

경상남도 86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6월 9일 진행된 2차심리에서 총림선원 부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임을 입증하는 경상남도 사실조회서가 회신됐다.

6월 9일 진주지법 2차 심리서
분원 재산권 무시한 주장 논란
산18-1번지 직접 매수 주장도

총림선원, 유족 증언으로 반박
전통사찰보존지 입증서류 제출
7월 21일 3차 심리 진행할 예정

이번 심리에서는 소송의 원인이 된 망경동 18-1번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됐다. 앞서 진주시와 선학원 측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총림선원 측 주장과 관련,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지(혹은 보존구역)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를 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재판부에 회신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산18-1번지는 총림선원의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며, 해당 부지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구역) 현황 목록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선학원 측은 해당부지와 관련해 "총림선원이 선학원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인 김모씨로부터 선학원이 직접 매수했다"며 "선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재단 직할 토지'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림선원 측이 당시 총림사 재산의 무상증여를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토지 원소유자의 유족 A씨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선학원 주장을 반박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소유자 김모씨는 총림선원(당시 총림사)를 창건한 황야공 보살의 직계가족이며, A씨는 원기증자 김모 씨가 본인 명의의 모든 총림사 재산을 총림사로 이전할 당시의 업무를 처리한 당사자다.

A씨는 해당 문서에서 "1977년 이전에는 총림사가 조계종 해인사 말사였기 때문에 조계종 법에 따라 재산을 총림사로 이전시켰지만, 1977년 총림사가 재단법인 선학원을 소속 종단으로 하게 되면서 1979년에는 총림사에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당시 총림사 주지의 안내에 따라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를 택한 것"이라며 "당시 원기증자는 총림사가 선학원 소속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오로지 총림사의 영구보전과 발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말한 서류를 제출했고 모든 재산은 무상증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현 상황에 대해 "신도가 사찰에 시주한 부동산을 종단이 팔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림사가 재산을 회복해 원기증자의 유지가 훼손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심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심리는 7월 21일 열린다.

"정상화 총력 다 하겠다"

나눔의집 대표 성화 스님



"할머니들을 편히 모시는 것을 최우선 삼아 운영상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나눔의집의 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25일 개최된 나눔의집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성화 스님〈사진〉이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표이사로서의 포부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 개관 30년을 맞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수 십 년 동안 노력한 나눔의집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생존 할머니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양로시설로써 행정적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98세 어르신을 포함해 4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성화 스님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정신적, 의료적, 일상생활에서 평안하실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각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 기자간담회서 운영계획
역사관 개보수 등 안정 찾기 최선
"할머니 평안한 여생에 전념할 것"

2년 넘게 운영되지 못했던 나눔의집 부설 시설인 역사관의 재개관 계획도 밝혔다. 역사관 재개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성 인권 유린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상징적 장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나눔의집은 빠른 시일 내에 역사관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학예사 채용 등 조속한 개관 준비를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를 통해 어르신의 유품과 전시물에 대한 진품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목록 작성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년이 넘도록 임시이사 체제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법이나 재무회계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강공사와 방문자를 위한 공간 활용,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시설 정비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안정화를 통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반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8월 14일 관내에서 진행될 기림의날에서는 할머니 17분 동상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주요 인사를 초청, 기념공연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여성을 위한 국제연대도 결의할 방침이다.11월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나눔의집과 역사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계획돼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에는 1992년 서교동에서 시작된 나눔의집의 역사를 정리한 30년사를 발간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통해 향후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화 스님은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민 모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민 모임은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돼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6월 12일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이 양로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어르신들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돼 불필요한 싸움이 일단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7월 19일 개원

6월 15일 연석회의서 확정



조계종 제225차 중앙종회 임시회가 7월 19일부터 5일 회기로 개원한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제17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6월 14일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제23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25회 임시회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안건접수 기간은 7월 12일까지, 종책질의 접수는 7월 14일까지다.

주요안건으로는 종책질의의 건과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제22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또 총무원 발의로 대종사 · 명사 임명 동의안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7월 6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이 제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제17대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해 종무보고의 건을 안건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됐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이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적인 보고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종책질의를 충실히 진행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가능토록 하자는데 공의를 모았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하안거 포살법회 3년만에 재개

직할교구, 6월 14일 조계사서



조계종 직할교구는 6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불교 전통의식 포살을 진행했다. 포살법회는 안거기간 수행자들이 대중에게 허물을 묻고 참회하며 재발심하는 법석이다. 이날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이 일제히 법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살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한 가운데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토대로 진행됐다. 포살은 대중의 참여와 화합을 확인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대중갈마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과 화합, 계율을 재확인하고 부족함을 물어 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포살 의식에서 300여명의 직할교구 대중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법사인 원행 스님의 질의에 답하고 계본을 함께 낭독하며 갈마에 임했다.

한편 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에 의거해 안거시 결계신고와 안거기간 중 한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이례적으로 포살의식을 생략하고 결계신고로 대체키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소되면서 다시 재개됐다. 송지희 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제24차 임시총회 (총회 안건 경과 통보)

본 종단인 한국불교조계종 및 협의회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백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종단 행정을 새롭게 도모하고 포교 중심으로 종단의 변혁을 이루는데 종도들의 화합과 교육, 복지, 방송, 신문사 언론기관 등 새로운 원융화합과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법불교적인 수행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종헌종법 1장 3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❶ 임직원 선출 및 해임 건

1. 본 종단은 종헌종법 제1장 4조 (직원의 자격)
총무원 직원의 부서와 자격은 본 종단 직원 법의 자격으로 규정한다.
본 종단에서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종회, 각 교구원장, 부장, 국장 임직원을 다시 선출 하되 아래와 같이 해당자는 임직원에서 제외한다.

제3장 제7조 징계 및 공권정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본 종단에 분단금(3년~5년)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 본 종단 승려는 분단금 3년~5년 이상 미납자는 다음과 같다.
3. 치탈. 승적을 사적하고 사찰등록증, 승려증을 회수한다.
4. 위와 같이 징계자는 본 종단의 승려 자격을 상실하며 승적에서 제적한다.
5. 징계 받는 자는 본 종단 직원 (주지, 간부직) 취임하지 못한다.
가. 기간은 최하 1개월 ~ 5년까지로 한다.
나. 법계 강등 및 법계 원부를 삭제하고 법계를 회수한다.
다. 다음과 같이 종헌종법 제3장 7조, 8조, 9조, 10조 참조할 것.

제1조 제2조 상벌법 시행

1. 제조(목적) 이 법은 종헌종법 제71조 의거하여 종도의 포상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본 종단 승려 및 신도의 선행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징계를 행한다.
3. 공로 포상은 종헌종법 의거하여 총무원장이 행한다.

❷ 분한신고 건

1. 본 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한신고를 이행한다.
1) 사찰등록증, 승려증을 재발급하며 전 사암 등 분한신고를 전제로 한다.
2) 분한신고하지 않는 사암은 본 종단에서 아래와 같다.
3) 탈종, 치탈, 도첩 및 고유번호, 사용중지 통보.(현대불교신문)
4) 분한 신고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함.

❸ 종교인 소득 및 연말정산 건

본 종단에 소속된 사암은 연말정산 고유번호는 분단금 미납된 날로 취소. 분단금 3년~5년 이상 미납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배상명령, 미납일로부터 연말정산 발행한 시점까지 사암 고유번호 사용정지 통보 사찰에 대한 조사.

❹ 안건 내용 결과 통보

위 총회 안건은 2022년 6월 9일 임시총회에 나온 의견이며, 전체 동의함.
일 시 : 불기 2566년 6월 9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총본산 문경 백봉사
참석인원 : 스님 61명 전체 동의함.

위 안건에 대한 이의 없음과 전체 동의에 본 종단의 안건을 종헌종법 그대로 실행할 것을 알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불기2566년 6월 15일

문화관광부 허가 제2009-7 법인등록번호 : 2300121-0003919 특허출현 제45-0061531

社)韓國佛教曹溪宗協義會 總務院長 大峯 合掌

문서 번호 : 22-0024 일자 : 불기2566년(2022) 6월 9일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 **문경백봉사** : 1577-1016 · 054-571-6973, 1030, 7498 **방송국** :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 한국불교방송신문사 / 한국불교문화관광사업부 **종무원** :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 사)한국불교문화민속협의회(대구종무원 : 전화 1670-2012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